## 인사규정 (결격사유)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9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10. 비위로 채용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1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